

2019년 11월 5일 본 법원은 정부 유닛에 의한 클레임, 파산법 제 503(b)(9)항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² 개정된 상세 명세서 클레임, 및 손해배상 클레임 거부를 포함한 채무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클레임 증빙 서류(“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³ 정하라고 명령[소송사건 일람번호 396] (“제출기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본 통지 (“통지”)와 동봉된 파산채권신고 양식은 (있을 경우) 본 사건으로 제출된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자산 및 부채에서 귀하가 청구한 금액, 성격 및 분류를 식별합니다 (“상세 명세서”). 채무자들이 귀하가 둘 이상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했다고 생각할 경우,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의 성격과 금액이 반영된 다수의 파산채권신고 양식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파산채권신고 양식에 기재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에 줄을 그어 지운 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본 통지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체”라는 용어는 파산법 제 101(15)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모든 개인, 부동산, 신탁, 정부 기관 및 델라웨어 지구의 미국 자산 관리 기관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과 “정부 기관”이라는 용어는 각각 파산법 제 101(41)항과 101(27)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통지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청구”라는 용어는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채무자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파산법 제 101(5)항에 따라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판결, 청산, 미청산, 고정, 우발, 만기, 분쟁, 논란, 합법, 공평, 담보 또는 무담보로 인한 권리에 대한 지불 권한; 또는 (b) 이행 위반으로 인해 지불금 권리가 발생할 시, 판결, 청산, 미청산, 고정, 우발, 만기, 분쟁, 논란, 합법, 공평, 담보 또는 무담보로 인한 공정한 구제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행 위반에 대한 공정한 구제책.

I. 제출기한.

제출기한 명령은 본 11 장 사건 (이하 “제출기한”)에서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 기한으로 정합니다.

- a. **청구 제출기한.** 제출기한에 따라, 이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일에 이들 케이스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는, 파산법 제 503(b)(9)항에 따른 지불 요구를 포함하여, 2020년 1월 13일 오후 5시, 동부 표준시 오후 5:00 시까지 파산채권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클레임 제출기한은 보증된 클레임, 보장되지 않은 우선순위 클레임 및

² 파산법 제 503(b)(9)항과 관련된 클레임은 파산신청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판매된 상품의 가치와 관련됩니다.

³ 여기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제출기한 명령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보장되지 않은 비우선순위 클레임을 포함하여,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유형의 클레임에 적용됩니다; 이는 아래 하위문단 (b), (c) 또는 (d)에 명시된 다른 제출기한 중 하나에 의거하는 클레임들 및 이 통지의 III 절에 명시된 해당 제출기한 준수를 특별히 면제하는 클레임을 제외합니다.

- b. 정부 제출기한 제출기한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신청일에 이들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은, 2020년 3월 27일 오후 5시, 동부 표준시 오후 5:00 시까지 파산채권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 제출기한은 파산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한 모든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담보, 무담보 우선권 또는 무담보 비우선권). 채무자가 당사자였던 과세 연도, 기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세금 청구를 포함한 정부 기관 또한 이에 속하지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c. 개정된 상세 명세서 제출기한. 제출기한에 따라, 상세 명세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클레임을 주장하는 모든 당사자는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그러한 파산채권신고가 실제로 채무자의 청구 및 대리인인 Prime Clerk LLC ("Prime Clerk ")에 의해 상세 명세서에 수정된 제출기한까지 수령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 날짜는 (i) 해당되는 경우, 클레임 제출기한 또는 정부 제출기한 중 늦은 날짜, 또한 (ii) 동부 표준시로 오후 5:00이며, 채무자가 해당 채권자에게 이러한 수정 또는 보완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는 날짜로부터 21일 후입니다.

- d. 거부 배상청구 제출기한 제출기한 명령에 따라, 미이행 계약 또는 만기되지 않은 임대 거부로 발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모든 당사자는, 해당 거부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신고를 Prime Clerk 에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i) 해당되는 경우, 거부 배상청구 제출기한은 (i) 청구 제출기한 또는 정부 제출기한 중 늦은 날짜; (ii) 동부 표준시로 오후 5:00이며, (A) 이러한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이의 제기 마감 날짜를 갖습니다. 또한 (B) 모든 미이행 계약의 거부를 승인하는 명령 작성 통지일 또는 채무자들의 만기되지 않은 임대 계약 및 그러한 모든 이의 신청은 기각 또는 철회 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거부된 비거주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그러한 임대의 거부 또는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파산채권신고는 서비스 제공 후 30일 이내에 통지 및 청구 에이전트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iii) 본 법원이 그러한 거부를 승인한 해당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II. 파산채권신고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

본 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시한 다음의 단체들은 파산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또는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제출기한에 반드시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해당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에 클레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상세 명세서가 “조건부”, “미청산” 또는 “이의”가 제기된 가운데 그러한 개인 혹은 단체가 제 11 장 사건에 참여하길 원하거나 제 11 장 사건에 대한 분배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 b. 클레임이 상세 명세서에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표시되고 상세 명세서에 식별된 것과 다른 분류 또는 금액으로 클레임을 허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 c.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Prepetition 클레임이 특정 채무자의 의무가 아니며, 상세 명세서에 식별된 채무자 이외의 채무자 또는 그 외의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 허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 d. 파산법 제 503(b)(9)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상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클레임 우선권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단체.

III. 파산채권신청이 필요치 않는 당사자들.

특정 당사자는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원은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클레임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마감일을 정하도록 하나 이상의 개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본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 귀하는 통지를 받게됩니다. 제출기한 적용을 받아야 할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의 단체는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각각의 채무자(들)에 대해 법원 서기 또는 Prime Clerk 에 공식 양식 410 또는 본 통지에 첨부된 양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파산채권신고를 이미 제출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 b. 상세 명세서에 클레임이 기재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클레임이 "분쟁", "조건부" 또는 "미청산" 중 어느 것으로도 명시되지 **않음**; (ii)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는 상세 명세서에 명시된 청구 금액, 성격 및 우선 순위에 동의함; 또한 (iii)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 클레임이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특정 채무자의 의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c. 본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전에 청구가 허용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 d. 파산법에 따라 또는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클레임 전액을 지불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 e. 다른 채무자에 대한 클레임을 주장하는 모든 채무자 또는 비채무자 자회사;
- f. 채무자의 비채무 계열사에 대해서만 클레임을 주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및
- g. 채무자에 대한 지분 보유자는 현재 해당 지분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지분권이나 그러한 지분의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해 클레임을 주장하려는 지분 보유자는, 여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청구 제한기한 또는 그 이전에 그러한 클레임이 제기된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h. 파산신청일 당일 고용된 채무자의 직원이며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일반 업무 과정에서 임금, 커미션, 혜택, 건강 관리 청구 또는 퇴직과 같은 청구를 존중하도록 승인한 경우, 직원은 파산신청일 전에 발생한 부당한 해고, 차별, 괴롭힘,

적대적 근무 환경 및/또는 보복을 포함하여 모든 클레임을 클레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i. 손해배상, 기부 또는 상환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현재 또는 전 임원, 이사 또는 직원;
- j. 본 법원이 별도의 기한을 정한 클레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k. 본 11 장 사건의 경우에 보관된 전문가의 수수료 및 비용 청구;
- l. DIP 문서 또는 Prepetition ABL 문서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클레임에 관한 모든 DIP 에이전트, DIP 대출자 또는 Prepetition ABL 당사자 (본 하위 항의 각 용어는 채무자의 사후 금융 주문서에 정의됨 [소송사건 일람번호 133]); 및
- m. 파산법 제 503(b)항 및 507(a)(2)항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한 모든 주체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산법 제 503(b)(9)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체는 그러한 클레임을 청구 제출기한 전에 지불 요청을 하거나 파산채권신고를 함으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파산채권신고 제출 안내.

각 파산채권신고의 제출 및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a. **내용.** 각 파산채권신고는 반드시 (i)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ii) 미국 달러로 표시된 청구 금액을 포함하고; (iii) 채무자 또는 공식 양식 410 에서 제공한 파산채권신고 양식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며; (iv)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b. **제 503(b)(9) 항 클레임** 파산법 제 503 (b)(9)항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클레임을 주장하는 모든 파산채권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파산 신청일 이전 20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배달되고 수령한 물품의 가치를 포함하고; (ii) 503(b)(9)에 대한 클레임이 주장되는 특정 송장을 식별하는 문서를 첨부하며; (iii) 파산법 제 546(c)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환취요구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의 첨부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 c. **원본 서명이 필요합니다.** 파산채권신고 원본이나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된 파산채권신고만이

클레임 관리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된 파산채권신고 또는 파산채권신고 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d. **채무자 단체의 식별.** 각 파산채권신고는 개별 채무자의 사례 번호를 포함하여 청구가 제기된 채무자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공동 행정 사건 번호 19-12122 (KG) 에 따라 제기된 파산채권신고 또는 그 외의 특정 채무자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Forever 21, Inc.에 대해서만 청구 소송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 **다수 채무자 단체들에 대한 청구.** 본 법원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각 파산채권신고는 **단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해서만 클레임을 명시하고, 클레임이 청구되는 채무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채무자가 파산채권신고에 기재되어 있는 한, 첫 번째로 나열된 채권자에 대해서만 클레임이 제기된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f. **증빙 서류.** 각 파산채권신고는 파산법 3001(c) 및 (d)에 따른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 양이 방대한 경우, 그러한 파산채권신고는 그 문서의 요약 대신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파산채권신고에는 그러한 문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추가 서류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서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무자의 변호인에게 그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g. **적시 서비스.** 각 파산채권신고는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해당되는 대로 청구된 바 날짜 또는 정부의 바 날짜 혹은 그 이전에 Prime Clerk 에 의해 **실제로 수령**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서 또는 법원 오더에 명시된 다른 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함) (i)인터페이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에서 "클레임 제출"탭 또는 (ii) 미국 퍼스트클래스 우편, 미국 야간 우편, 또는 다음 주소로의 직접 배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ever 21 사 외. 클레임 처리
c/o Prime Clerk 사
850 Third Avenue, Suite 412
Brooklyn, New York 11232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파산채권신고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h. **서비스 수령.** Prime Clerk 로부터 자신의 파산채권신고들을 수령하였다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청구자들은 (i) 파산채권신고 양식 사본 (Prime Clerk 에게 보낸 원본 파산채권신고 양식과 함께) 및 (ii) 자신의 주소와 스탬프가 찍힌 봉투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V. 파산채권신고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결과.

바 날짜 오더와 파산법 3003(c)(2)에 따라, 만약 귀하 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단체가 바 날짜 오더에 따른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해야 하나 바 날짜 또는 그 전에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a. 귀하는 채무자에 대한 이러한 제 11 장의 케이스에서의 청구가 영원히 소멸되고, 막히며, 금지될 것입니다 (또는 이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의 제출).
- b. 확정된 제 11 장 파산 계획의 효력 발생일부터, 채무자와 그의 재산은 그러한 청구에 따라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됩니다.
- c. 귀하는 본 제 11 장 케이스에서의 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 d. 귀하는 이러한 소멸된 청구의 계정에 대한 제 11 장 계획 또는 채무자의 계획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제공된 경우, 클레임의 청구는 해당 소유자를 대신하여 상세 명세서에서 식별된 비분쟁, 비우발적 및 청산된 청구에 대해 상세 명세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주장 및 의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예정된 청구로 인해 본 제 11 장의 파산계획 또는 청산 계획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VI. 권리 보유.

이 고지사항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채무자의 다음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그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a) 그 성격, 금액, 책임 또는 분류와 관련하여 상세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반영된 어떠한 클레임 또는 제출된 클레임에 대한 분쟁, 상쇄 주장 또는 방어 (b) 예정된 클레임을 분쟁, 우발적 또는 청산으로 추후 지정; 또한, (c) 그 외에 달리 상세 명세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VII.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와 그에 대한 접근.

귀하는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의 하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채무자 단체에 대한 청구의 소유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청구의 성격, 금액 및 상태와 관련하여 동봉된 파산채권신고 양식에 기재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채무자가 귀하가 하나 이상의 채무자 단체에 대해 청구를 소유하였다고 믿는 경우, 귀하는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각의 채무자 단체에 대해 귀하의 청구의 성격과 금액을 반영하는 여러 파산채권신고 양식들을 수령하게 됩니다. 상세 명세서 사본은 Prime Clerk 의 웹사이트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에서 "Docket" 탭을 누른 다음, "상세 명세서 및 SOFA" 탭을 눌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채무자 상세 명세서에 의존하는 경우, 청구가 상세 명세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동봉된 양식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a) 예정된 대로 귀하의 청구 금액(해당하는 경우)이 명시; (b) 예정된 채무자 단체를 식별; (c) 귀하의 청구가 상세 명세서에 “우발적”, “비청구” 또는 “분쟁”으로 기재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또한 (d) 귀하의 청구가 보안, 비보안 우선 순위 또는 비보안 우선 순위 청구로 예정되어 있는지 식별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귀하가 채무자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귀하의 청구의 성격, 금액 및 상태에 동의하고, 귀하의 청구가 채무자에 의해 지정된 채무자 단체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한 귀하의 청구가 "분쟁", "우발적" 또는 "비청구"로 설명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귀하는 이 고지사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바 날짜 전에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VIII.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에 대한 수정.

만약, 본 고지사항의 날짜 이후에 채무자가 상세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명세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명세서에 반영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성격 또는 분류를 변경하거나 명세서에 새로운 클레임을 추가하려면, 이에 영향을 받는 채권자는 이하, 또는 그 이전에 수정된 클레임 청구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a)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 청구 바 날짜 또는 정부 바 날짜; 그리고 (b) 오후 5 시 (동부 표준시), 채무자가 상세 명세서에 대한 개정 고지를 한 날로부터 21 일 이후 (또는 법원이 결정하는 다른 기간) "수정된 상세 명세서 바 날짜".

IX. 추가 정보.

채무자의 상세 명세서 사본, 바 날짜 오더 및 기타 본 제 11 장 케이스와 관련된 정보는 Prime Clerk 의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 11 장 케이스와 상세 명세서 및 기타 서류는 법원의 웹 사이트 <http://www.deb.uscourts.gov> 에서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법원의 공개 액세스 (“PACER”)에 대한 로그인 식별 및 암호가 필요하며, 이는 <http://www.pacer.psc.uscourts.gov> 의 PACER 서비스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케이스에 제출된 상세 명세서 및 기타 문서 사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미국 파산 법원 서기 사무실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파산 법원은 824 Market Street, 3rd Floor, Wilmington, Delaware 19801.에 있습니다.

파산채권신고 제출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채무자의 클레임 대리인인 Prime Clerk 에 다음과 같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Forever 21 사 외, 클레임 처리, c/o Prime Clerk 사, 850 Third Avenue, Suite 412, Brooklyn, New York 11232: 또는 채무자의 구조 조정 핫라인: 877-510-9565 (수신자부담) or 917-947-5437 (인터넷서널). **Prime Clerk 는 귀하가 파산채권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없음에 유의하십시오.**

To access this Notice and the instructions set forth herein in Mandarin, Cantonese, and Korean visit Prime Clerk’s website at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如需查閱本通知和此处所列说明的中文、广东话和韩文版本, 请访问 Prime Clerk 的网站: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如需查閱本通知及此處所列說明的中文、廣東話和韓文版本, 請查看 Prime Clerk 的網站: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이 고지 사항과 여기에 나와있는 중국어, 광둥어 및 한국어 지침에 액세스하려면 Prime Clerk 웹 사이트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를 방문하십시오.

이 채무자에 대한 가능한 클레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가 파산채권신고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등, 이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안전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자문하여야 합니다.

날짜: 2019 년 11 월 5 일
Wilmington, Delaware

/s/ Laura Davis Jones

Laura Davis Jones (DE 바 번호. 2436)
James E. O'Neill (DE 바 번호. 4042)
Timothy P. Cairns (DE 바 번호. 4228)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
919 North Market Street, 17th Floor
P.O. Box 8705
Wilmington, Delaware 19899-8705 (Courier 19801)
전화: (302) 652-4100
팩스: (302) 652-4400
이메일: ljones@pszjlaw.com
joneill@pszjlaw.com
tcairns@pszjlaw.com

-또한-

Joshua A. Sussberg, P.C. (*pro hac vice* 가 허가됨)
Aparna Yenamandra (*pro hac vice* 가 허가됨)
KIRKLAND & ELLIS LLP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601 Lexingt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전화: (212) 446-4800
팩스: (212) 446-4900

-또한-

Anup Sathy, P.C. (*pro hac vice* 가 허가됨)
KIRKLAND & ELLIS LLP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300 North LaSalle Street
Chicago, Illinois 60654
전화: (312) 862-2000
팩스: (312) 862-2200

채무자와 기존경영자관리인에 대한 제안된 공동 변호인